



농림축산검역본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「동물운송 세부규정」 고시 개정안 의견 조회 및 수요조사

1. 동물보호법('22.4.26.) 및 같은 법 시행규칙('23.4.27.) 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「동물운송 세부규정」 고시를 개정하고자 하니,

2. 본 개정(안)에 대한 의견 또는 추가 수요가 있는 경우, 아래의 서식에 따라 2024.2.23.(금)까지 우리 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, 위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.

개 정(안)	수 정(안)	사 유

붙임 1. 조문별 개정이유서 1부.

2. 신규조문 대비표 1부.

3. 「동물운송 세부규정」 고시 개정(안) 전문 1부. 끝.

농림축산검역본부장



수신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(동물복지정책과장), 검역본부 내 가축방역 관련부서, 각 시도(나 01-18), 축산과학원장(기획조정과장), 사단법인 축산물처리협회장, (사)한국육계협회장

주무관

김양현

수의사무관

최일수

동물보호과 과 전결 2024. 2. 6.

장 직무대리 김희진

협조자

시행 동물보호과-504

(2024. 2. 6.)

접수

우 39660

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177, 농림축산검역본부 (울곡동) 본관동
4층 동물보호과

/ <http://www.qia.go.kr>

전화번호 054-912-0516

팩스번호 054-912-0528

/ huni8952@korea.kr

/ 대한민국 공개